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동일·유사과제의 심의절차 간소화〉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185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동일·유사한 과제의 심의 절차 간소화	3
2.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 특례 및 포상 규정 신설	9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 출 일 : 2024. 7. 24.
3. 회 부 일 : 2024. 7.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사·동일과제 신속처리 절차 마련(안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

의6제7항 신설)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그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는 전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안 제35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감독 및 임시허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다.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35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동일·유사한 과제의 심의 절차 간소화

개정안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와 관련하여 기존과 동일·유사한 과제 신청이 있는 경우 ①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을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 (안 제10조의3제8항 및 제10조의6제7항 신설)하고, ②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전문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0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 ⑨ (생략)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등과 관련하여 소관 기관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1.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1.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1.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	2.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

현행	개정안
⑪ (생략)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⑦ (생략) <u><신설></u>	<u>허가 등과 관련한 소관 기관의 조정</u> 3. <u>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의 검토</u> <u>· 조정 · 처리</u> 4. <u>그 밖에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⑪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 서비스의 내용 · 방식 · 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u> 1. <u>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u> 2. <u>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u>

현 행	개 정 안
⑧~⑭ (생략)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 ⑥ (생략) <신설>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⑨~⑮ (생략)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 15일 이내로 단축 2. 제5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제6항에 따른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위원회에 상정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전문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⑮ (생략)	⑧~⑯ (생략)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는 산업융합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기간·규모·구역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 현행법상 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련 법령에 해당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맞는 허가의 기준·요건이 없거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¹⁾

‘임시허가’는 안전성 등의 검증이 완료된 산업융합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법령 정비 이전에 임시로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로, 관련 허가의 기준·요건이 없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²⁾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30일 이

1)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2)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내에 그 검토결과를 회신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검토결과를 포함한 신청내용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³⁾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여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됨⁴⁾.

개정안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와 관련하여 이미 허가가 한 번 부여되었던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과제 신청에 대해서는 일종의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신설하여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에 따른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승인절차



* 전문위원회: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

3) 제8조(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①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산업융합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 제10조의6(임시허가) 규정도 이와 동일함

'24년 7월 기준(누적),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중 동일·유사과제 비중은 63.3%로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⁵⁾ 패스트트랙 도입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차관 12인 및 민간위원 12인으로 구성되는데, 통상 분기별로 1회 정도만 개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⁶⁾ 유사·동일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대신 실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위원회⁷⁾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면 관계 기업이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참고로, 본 개정안과 유사하게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3건⁸⁾이 함께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5)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중 동일·유사과제 비중 ('24.7월말 기준)

	'19	'20	'21	'22	'23	'24.7	계
총 안건	39	63	96	129	160	74	561
동일 유사(비중)		29(46%)	48(50%)	88(68.2%)	132(82.5%)	58(78.3%)	355(63.3%)

6) 최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 실적

구분	'19	'20	'21	'22	'23	'24.7	합계
규제특례 심의위원회(건)	6	5	6	4	4	3	25
전문위원회(건)	20	24	29	16	13	6	102

7) 산업부 1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규제내용에 따라 규제부처, 신청기업, 각 기관별 추천 전문가 등 실무급 책임인력이 참여함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20183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정부 제출, 의안번호 220183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부 제출, 의안번호 2201834)

2.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 특례 및 포상 규정 신설

개정안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승인, 관리·감독 등의 관련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안 제35조의2 신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 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 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 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 설>	제35조의3(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규제특례의 부여나 임시허가 등의 업무를 보다 적극적·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규제개선의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로 생각됨.

현행 「감사원법」 제34조의3⁹⁾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¹⁰⁾에서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일반적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면책규정을 둔다면 관계 공무원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법률」¹¹⁾ 등 다양한 개별 법률에서 동일한 내용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음¹²⁾.

문 의 처
02)6788-5461

9)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8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9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2) 그 밖에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등